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 해운대구청장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2017년 4월 12일 ~ 5월 1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심윤정(해운대구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배동경(세무사)
 - 검 사 위 원: 이미향(세무사)
 - 검 사 위 원: 이권재(전직 공무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결산검사위원

목 차

□ 결산검사 의견서	3
□ 2016년도의 통합결산서 검사 결과	5
□ 시정 및 개선사항	
1. 세입예산액 편성의 적정성	26
2. 해운대모래축제 예산초과로 인한 예비비 사용	27
3. 일반회계 집행잔액 최소화의 필요성	28
4. 과도한 용역 남발	30
5. 특별회계·세입증액 및 수납율 제고	32
6. 달맞이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집행현황	34
7. 설정근거가 미흡한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의 타당성 부족	35
8. 정책사업목표와 주요내용 간 연관성 부족	36
9.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확인 결과	37
□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38

결산검사 의견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2017년 5월 1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17년 4월 12일부터 2017년 5월 1일 까지(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해운대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해운대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심 윤 정



위 원

배 동 경



위 원

이 미 향



위 원

이 권 재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

(1) 재정여건

-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 회계	세 입	372,058,295,150	410,960,666,690	439,757,196,660	493,860,690,140	541,985,237,805
	세 출	319,446,172,460	363,188,015,600	394,407,575,680	435,500,473,960	457,883,648,960
	결산상 잉여금	52,612,122,690	47,772,651,090	45,349,620,980	58,360,216,180	84,101,588,845
특별 회계	세 입	19,221,866,254	20,860,944,556	19,764,073,792	18,159,030,647	22,025,385,928
	세 출	9,737,409,470	12,261,391,850	9,807,834,160	8,624,927,980	13,027,451,970
	결산상 잉여금	9,484,456,784	8,599,552,706	9,956,239,632	9,534,102,667	8,997,933,958
기금	수 입	14,851,819,510	15,633,807,070	16,395,016,556	17,741,181,217	18,421,008,151
	지 출	14,851,819,510	15,633,807,070	16,395,016,556	17,741,181,217	18,421,008,151
	결산상 잉여금	0	0	0	0	0
총계	세입(수입)	406,131,980,914	447,455,418,316	475,916,287,008	529,760,902,004	582,431,631,884
	세출(지출)	344,035,401,440	391,083,214,520	420,610,426,396	461,866,583,157	489,332,109,081
	결산상 잉여금	62,096,579,474	56,372,203,796	55,305,860,612	67,894,318,847	93,099,522,803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 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6년	1,379,176,632,801	33,640,970,442	1,345,535,662,359	500,359,308,409	444,044,143,701	56,315,164,708	
2015년	1,329,054,393,168	35,099,554,726	1,293,954,838,442	456,119,390,793	426,512,625,381	29,606,765,412	
증 감	50,122,239,633	(1,458,584,284)	51,580,823,917	44,239,917,616	17,531,518,320	26,708,399,296	

- 2016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51,580,823,917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0%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26,708,399,296원 (90.2%) 증가하였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 고
자치단체 채무계 a(b+c+d)	3,700,000,000	2,520,000,000	1,600,000,000	1,400,000,000	0	
공채 b	0	0	0	0	0	
차입금 c	3,700,000,000	2,520,000,000	1,600,000,000	1,400,000,000	0	
채무부담행위 d	0	0	0	0	0	
지방공기업 채무 e	0	0	0	0	0	
채무총합계 f(a+e)	3,700,000,000	2,520,000,000	1,600,000,000	1,400,000,000	0	

- 채무가 2016년에 소멸한 것은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차입금 채무 상환에 기인하였으며, 최근 5년간 채무는 세입증대 등으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음.

(2) 재정건전성

- 지방재정 위기 단체에 대한 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198호 2011.10.12.)에 의하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등의 지표를 주의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점	재정지표	해운대구	산정방식	주의 기준	심각(위기) 기준
채무 관리	① 예산대비채무비율	0%	$\frac{\text{지방채무 잔액}}{\text{총예산}}$	25%초과	40%초과
	② 채무상환비 비율	0.2%	$\frac{\text{지방채무 상환액}}{\text{일반재원}}$	12%초과	17%초과
세입 관리	③ 지방세 징수액현황	108.0%	$\frac{\text{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text{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50%미만	0%미만
자금 관리	④ 금고잔액 현황	129.1%	$\frac{\text{당해연도 분기말 잔고}}{\text{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미만	10%미만

- 해운대구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지는 않음.
- 또한 재정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다음과 같음.

$$\text{재정자립도} = 25.5\% \left[\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right]$$

-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과년도 수입

$$\text{재정자주도} = 88.0\% \left[\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right]$$

-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조금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 (C =A-B)
합계	574,460,660,611	582,431,631,884	489,332,109,081	93,099,522,803
일 반 회 계	534,928,018,890	541,985,237,805	457,883,648,960	84,101,588,845
특 별 회 계	21,111,633,570	22,025,385,928	13,027,451,970	8,997,933,958
기 금	18,421,008,151	18,421,008,151	18,421,008,151	0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월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계	1,400,000,000	31,707,125,200	8,138,545,190	7,973,995,450	5,882,923,036	37,996,933,927
일 반 회 계	1,400,000,000	29,788,086,970	8,138,545,190	7,973,995,450	5,826,350,136	30,974,611,099
특 별 회 계	0	1,919,038,230	0	0	56,572,900	7,022,322,828
기 금	0	0	0	0	0	0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64,010,623,733원으로 예산현액 556,039,652,460원보다 7,970,971,273원이 더 수납 되었음.
-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3.5%인 470,911,100,930원으로 차인잔액은 93,099,522,803원임.
- 이중 명시이월비 31,707,125,200원, 사고이월비 8,138,545,190원 및 계속비 7,973,995,45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882,923,036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서 현년도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7,996,933,927원임.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세계잉여금은 39,396,933,927원임이 확인됨.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산액	534,928,018,890	568,600,417,315	541,985,237,805	2,863,534,720	26,615,179,510
결산확인액	534,928,018,890	568,600,417,315	541,985,237,805	2,863,534,720	26,615,179,510
차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541,985,237,805원은 예산현액의 101.3%로서 7,057,218,915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부동산경기활성화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토지 및 건물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의 증가와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기인함.
-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5.3%로 전년도 96.0%보다 0.7%가 증가 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863,534,720원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무재산과 시효소멸완성 등으로 인해 발생 하고 있음.

○ 수납액

-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었으나 세입과목(목)별 결산에 있어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76,000,000원을 업무착오로 일반회계의 자치구조정교부금에 계상하여 과오납 반환 처리한 사실이 있었으며, 건설과 시비교부액 중 「해운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비 40,000,000원이 일반회계 계좌로 교부되어 하수도특별회계로 과오납반환 처리한 사실이 있었음.

○ 세입과목 적용

- 늘푸른과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수료 수입은 예산액 설정시 적정하게 계상하였으나 징수결정시 재산임대수입으로 잘못 계상하여 결산하였음.

○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

- 수납총액 542,881,001,035원 중 과오납반환액은 895,763,230원으로 실수납액은 541,985,237,805원임. 미수납액 26,615,179,510원 중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은 23,751,644,790원으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금액은 15,117,926,770원임. 소송계류 중인 사건 중 5,132,462,780원은 해운대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분으로 이는 2017.2.7. 행정소송이 종결 확정되어 패소 결정이 내려져 2017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세외수입 감액 조치할 건으로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의 21.6%에 상당함.

○ 불납결손처분

- 불납결손처분액의 대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불납결손액의 97.8%에 상당하는 2,799,617,660원임. 이는 지난연도분 2,011,074,380원, 현년도분 788,543,280원으로 현년도분은 동남해상관광호텔 공유수면변상금으로 징수결정 되었으나 행정소송 패소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음.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541,985,237,805	541,985,237,805	0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원, %)

연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수납액	징수결정대비 불납결손율
2016	513,832,629,000	568,600,417,315	541,985,237,805	2,863,534,720	54,767,788,315	△26,615,179,510	0.5%
2015	462,740,824,000	514,165,591,470	493,860,690,140	2,983,635,640	51,424,767,470	△20,304,901,330	0.6%
증감	51,091,805,000	54,434,825,845	48,124,547,665	△120,100,920	3,343,020,845	△6,310,278,180	△0.1%

-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부동산경기활성화에 따른 근저당권설정 건수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의 대폭 상승,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인한 것이며,
- 수납액은 전년도 493,860,690,140원 보다 48,124,547,665원이 많은 541,985,237,805원이 수납되었음.
-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2,983,635,640원 보다 120,100,920원이 감소한 2,863,534,720원으로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2,452,428,820원, 시효 소멸 411,105,900원 등임.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 계	534,928,018,890	568,600,417,315	541,985,237,805	2,863,534,720	26,615,179,510	
지방세	소계	94,417,000,000	102,352,042,875	99,774,866,515	63,917,060	2,577,176,360
	등록면허세	12,877,000,000	14,824,142,225	14,741,185,585	-	82,956,640
	주민세	5,116,000,000	5,474,780,780	5,414,101,900	-	60,678,880
	재산세	75,400,000,000	79,459,283,630	78,221,668,570	-	1,237,615,060
	지방소득세	-	98,697,770	98,697,770	-	-
	지난년도수입	1,024,000,000	2,495,138,470	1,299,212,690	63,917,060	1,195,925,780
세외수입	32,457,496,000	58,259,218,300	34,221,215,150	2,799,617,660	24,038,003,150	
경상	재산임대수입	245,178,000	374,548,720	334,237,330	-	40,311,390
	사용료 수입	2,940,979,000	7,279,112,480	3,101,373,550	-	4,177,738,930
	수수료수입	9,579,678,000	8,998,778,700	8,942,415,810	-	56,362,890
	징수교부금수입	8,735,280,000	9,454,002,220	9,454,002,220	-	-
	이자수입	712,000,000	948,558,600	948,558,600	-	-
임시	재산매각수입	200,000,000	116,001,910	116,001,910	-	-
	부담금	3,065,000,000	2,936,495,080	2,936,495,080	-	-
	과징금및과태료등	1,523,882,000	7,879,946,740	2,380,719,990	788,543,280	5,499,226,750
	기타수입	3,055,499,000	5,000,311,150	3,556,582,650	-	1,443,728,500
	지난년도수입	2,400,000,000	15,271,462,700	2,450,828,010	2,011,074,380	12,820,634,690
지방교부세	10,916,838,000	10,916,838,000	10,916,838,000	-	-	
조정교부금 등	39,789,195,000	39,776,203,000	39,776,203,000	-	-	
보조금	298,987,275,000	298,935,898,960	298,935,898,96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8,360,214,890	58,360,216,180	58,360,216,180	-	-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18.4%인 99,774,866,515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34,221,215,150원이 수납되었음. 지방교부세는 2.0%인 10,916,838,000원, 조정 교부금 등은 39,776,203,000원, 보조금 등은 298,935,898,960원이 수납되었음.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산액	513,832,629,000	534,928,018,890	457,883,648,960	45,900,627,610	31,143,742,320
결산확인액	513,832,629,000	534,928,018,890	457,883,648,960	45,900,627,610	31,143,742,320
차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513,832,629,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21,095,389,89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34,928,018,890원임.
- 세출예산전용액은 예산액의 0.01%인 73,816,000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개발부담금 부과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지출액 부족분 지원, 영산대일원 등산로 신규조성 및 배수로 정비, 어울림 페스티벌 및 청사포 예술거리 조성행사의 운영비 부족 등임. 특히 행사 등의 운용비 부족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됨.
- 이용 및 이체는 예산액의 8.5%인 43,489,452,130원으로서 우3동 주민센터와 반여3동 주민센터 건립, 재무과의 신설 등 조직개편에 기인함.
- 예비비사용액은 382,456,000원임. 주요 내역은 태풍 ‘차바’ 재난지원금 지원, 해운대모래축제 예산초과 지출분 등이 있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6%에 해당하는 457,883,648,96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45,900,627,61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71건으로 29,788,086,970원이며 주요사업은 좌동진출램프 설치공사 등임. 사고이월액은 34건으로 8,138,545,190원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반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의 지연 등에 기인함.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8%에 해당되는 31,143,742,320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동백섬 출렁다리 설치사업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결과로 인한 변경 조성, 송정터널 보도설치공사를 송정해수욕장 일원 보도정비 사업으로 변경, 인건비 과다계상 등에 기인함.

○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

(단위: 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집행잔액	884,650,190	2,560,302,470	2,641,866,650

- 인건비 편성 시 휴직자 포함한 현원으로 편성하여 집행잔액 발생함.
-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1월, 7월에 월 봉급액의 0%~50% 차등 지급 되는 수당으로, 본예산 편성 시 100% 지급으로 편성했으나 실제로 85%로 지급됨.
- 연가보상일수 20일로 편성했으나 평균 15일 이하로 보상되면서 집행잔액 발생함.
- 초과근무수당은 본예산 편성 시 100% 지급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지급률 80~90% 정도로 집행잔액 발생함.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월 봉급액의 4.1% 지급되는 대우공무원 수당은 본예산 편성 시 정원의 1/2 지급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1/4 정도 지급됨.
- 이 같은 사유로 2015년부터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 함.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수당 등의 지급 정도를 면밀하게 분석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

○ 예비비사용

-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임.
- 해운대모래축제 예산초과로 인하여 예비비를 301,153,000원 사용하였음. 해마다 있어왔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초과로 인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지출로 보기 어려움. 사안이 중대하므로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음.
-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수영장내 디퓨저가 심하게 흔들려 추락시 인명사고 발생위험으로 점검 및 교체를 위해 예비비 27,000,000원 사용. 예측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사고위험까지 있었으므로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 예비비를 사용하였는데 적절한 대처였다고 판단함.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457,883,648,960	457,883,648,960	0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원)

구 분	2015년 지출액	2016 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계	435,500,473,960	534,928,018,890	457,883,648,960	86%	22,383,175,000	105%
일반공공행정	20,833,689,760	22,235,353,130	19,385,559,800	87%	△1,448,129,960	93%
공공질서및안전	10,644,153,380	15,710,125,170	8,038,132,850	51%	△2,606,020,530	76%
교육	3,502,972,990	7,021,226,000	3,934,289,790	56%	431,316,800	112%
문화및관광	8,373,628,440	17,482,293,010	11,444,218,450	65%	3,070,590,010	137%
환경보호	20,271,012,400	22,297,669,400	19,930,506,070	89%	△340,506,330	98%
사회복지	260,298,942,020	295,777,718,190	277,468,213,280	94%	17,169,271,260	107%
보건	10,323,405,750	12,271,231,000	11,917,159,490	97%	1,593,753,740	115%
농림해양수산	4,164,473,920	5,943,460,320	4,619,736,420	78%	455,262,500	111%
산업·중소기업	4,562,197,830	5,681,721,920	3,851,510,380	68%	△710,687,450	84%
수송및교통	15,194,296,410	21,543,205,440	14,402,659,450	67%	△791,636,960	95%
국토및지역개발	7,941,029,830	14,481,781,310	10,316,718,780	71%	2,375,688,950	130%
기타	69,390,671,230	75,413,905,000	72,574,944,200	96%	3,184,272,970	105%

-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277,468,213,280원, 기타 72,574,944,200원, 환경보호 19,930,506,070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사회복지 17,169,271,260원이며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은 문화 및 관광으로 전년대비 37%가 증가하였다.

(3) 특별회계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21,111,633,570	32,854,736,072	22,025,385,928	785,778,060	10,829,350,144
주차장	17,809,475,570	27,410,465,241	18,775,007,781	321,090,350	8,635,457,460
의료급여기금	982,497,000	3,110,677,685	1,115,574,095	464,687,710	1,995,103,590
지하수관리	1,690,934,000	1,704,567,450	1,563,401,740	-	141,165,710
기반시설	349,103,000	344,457,840	344,457,840	-	-
주거환경개선사업	279,624,000	284,567,856	226,944,472	-	57,623,384
결산확인액	21,111,633,570	32,854,736,072	22,025,385,928	785,778,060	10,829,350,144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22,025,385,928원은 예산액의 104.3%로서 913,752,358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67.0%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3.3%가 증가하였음.
- 불납결손액은 785,778,060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 등에 기인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3.0%인 10,829,350,144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기미도래, 정리유예에 기인한 것임.

○ 불납결손처분

- 785,778,060원이 발생되었으나 검사결과 처분사유가 적정하였음.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22,025,385,928	22,025,385,928	0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5,808,542,000	21,111,633,570	13,027,451,970	1,919,038,230	6,165,143,370
주차장	12,536,384,000	17,809,475,570	11,900,900,320	1,919,038,230	3,989,537,020
의료급여기금	982,497,000	982,497,000	942,384,390	-	40,112,610
지하수관리	1,690,934,000	1,690,934,000	100,431,070	-	1,590,502,930
기반시설	319,103,000	349,103,000	29,831,980	-	319,271,020
주거환경개선사업	279,624,000	279,624,000	53,904,210	-	225,719,790
결산확인액	15,808,542,000	21,111,633,570	13,027,451,970	1,919,038,230	6,165,143,370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15,808,542,000원 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5,303,091,57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21,111,633,570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 및 이용 사실은 없었음.
- 예산이체액은 12,422,05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직제개편에 따른 것임.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7%에 해당하는 13,027,451,970원이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 이월은 1,919,038,230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건립사업의 공사기간부족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2%에 해당하는 6,165,143,370원이었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3,027,451,970	13,027,451,970	0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음.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는 다음과 같음.

계속비이월 ·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단위: 원)

구 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내역(건수)	금액	내역(건수)	금액	내역(건수)	금액	
합 계	11건	7,973,995,450	77건	31,707,125,200	34건	8,138,545,190	
일반회계	인문학도서관 건립 외 10건	7,973,995,450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 지원 외 70건	29,788,086,970	반 송 창 조 그 린 웨 이 조성 사업 외 33건	8,138,545,190	
특별회계		-	주 택 가 소규모주차장 조성 사업 외 5건	1,919,038,230		-	

3. 재무제표의 결산

2016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음.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원, %)

구 분	2016	2015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379,176,632,801	1,329,054,393,168	50,122,239,633	3.8
I. 유 동 자 산	145,743,295,120	114,690,090,358	31,053,204,762	27.1
II. 투 자 자 산	4,094,827,970	3,827,527,970	267,300,000	7.0
III. 일 반 유 형 자 산	147,079,766,750	145,324,473,935	1,755,292,815	1.2
IV. 주 민 편 의 시 설	262,979,433,306	253,115,483,616	9,863,949,690	3.9
V. 사 회 기 반 시 설	817,116,835,608	809,931,654,975	7,185,180,633	0.9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162,474,047	2,165,162,314	△2,688,267	△0.1
부 채	33,640,970,442	35,099,554,726	△1,458,584,284	△4.2
I. 유 동 부 채	12,544,847,347	12,969,083,049	△424,235,702	△3.3
II. 장 기 차 입 부 채	0	1,200,000,000	△1,200,000,000	△100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21,096,123,095	20,930,471,677	165,651,418	0.8
순 자 산	1,345,535,662,359	1,293,954,838,442	51,580,823,917	4.0
I. 고 정 순 자 산	1,218,069,159,676	1,197,145,742,152	20,923,417,524	1.7
II. 특 정 순 자 산	18,169,898,186	17,270,622,071	899,276,115	5.2
III. 일 반 순 자 산	109,296,604,497	79,538,474,219	29,758,130,278	37.4

- 2016회계연도 말 해운대구의 자산은 1조 3,791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 3,290억원보다 501억원(3.8%)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기금융상품이 증가하는 등 유동자산이 전년대비 310억원(27.1%) 증가였고,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 기반시설 조성 과 과년도 누락분 공유재산과 물품 일제정리 등의 영향으로 유형자산이 전년대비 188억원(1.6%) 증가하였기 때문임.

- 반면, 2016회계연도 말 해운대구의 부채는 336억원으로 전년도의 350억원보다 14억원(4.2%)감소하였는데, 이는 해운대구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 차입한 부채 14억원(2022년 만기)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것임.
- 또한, 2016회계연도 말 해운대구의 순자산은 1조 3,45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15억원 증가하였는 바, 이는 재정운영결과로 563억원 증가되었으나 양여, 기부로 인한 자산 증·감소분 13억원과 기타순자산 증·감소분 38억원으로 인한 것임.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원, %)

구 분	2016	2015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사업순원가 (가 - 나)	48,393,700,495	61,576,602,007	△13,182,901,512	△21.4
가. 사업총원가	353,529,810,315	344,489,248,252	9,040,562,063	2.6
나. 사업수익	305,136,109,820	282,912,646,245	22,223,463,575	7.9
II. 관리운영비	78,471,109,958	73,212,257,236	5,258,852,722	7.2
III. 배분비용	12,043,223,428	8,811,119,893	3,232,103,535	36.7
IV. 배분수익	15,428,648,032	8,658,358,448	6,770,289,584	78.2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23,479,385,849	134,941,620,688	△11,462,234,839	△8.5
VI. 일반수익	179,794,550,557	164,548,386,100	15,246,164,457	9.3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56,315,164,708	△29,606,765,412	△26,708,399,296	90.2

- 해운대구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3,535억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051억원을 차감한 483억원이며, 총 122개의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노인복지 지원’ (85억원)와 ‘선진 청소서비스 제공’ (84억원)이었음.

- 또한, 2016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741억원과 기타 관리운영비 4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72억원과 대손상각비 38억원, 기타비용 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경상세외수익 14억원 임시세외수익 59억원, 기타수익 8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6회계연도 해운대구의 재정운영결과는 563억원으로 전년도의 296억원 보다 267억원(90.2%) 증가하였는데 이는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이 각각 52억원, 32억원, 67억원 증가하였으나, 사업순원가가 131억원 감소하여 재정운영순원가가 114억원(8.5%) 감소하였고, 일반수익이 152억원 (9.3%) 증가하였기 때문임.

4. 성과보고서

- 해운대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해운대구는 본 회계연도의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9개)-정책사업목표(88개)-단위사업(16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8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7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p)

구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B/A)
계	9	88	175	165	10	94.3
기획조정실	1	4	7	6	1	85.7
감사담당관	1	1	1	1	0	100
행정관리국	1	19	39	37	2	94.9
일자리산업국	1	19	35	33	2	94.3
주민생활지원국	1	22	39	35	4	89.7
안전도시국	1	14	29	29	0	100
의회사무국	1	1	4	4	0	100
직속기관	1	2	4	4	0	100
사업소	1	6	17	16	1	94.1

- 해운대구의 성과지표 달성편향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등 4개 기관은 100%를 달성한 반면, 기획조정실은 85.7%, 행정관리국은 94.9%, 일자리 산업국은 94.3%, 주민생활지원국은 89.7%, 사업소는 94.1% 달성하였음.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정책사업목표와 사업내용간의 연관성이 멀어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정책사업에 따른 성과지표의 설정근거가 미흡해 보이거나 측정 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도 확인되었다. 또한,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목표치 수정도 일부 발견되었으며 성과분석에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130%이상)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5.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채권현황

(단위: 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5,194,379,490	1,328,730,132	655,015,672	5,868,093,950
일반회계	3,639,881,510	39,862,780	13,231,440	3,666,512,850
특별회계	1,202,859,110	928,480,710	600,923,940	1,530,415,88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02,859,110	928,480,710	600,923,940	1,530,415,880
기금	351,638,870	360,386,642	40,860,292	671,165,220
사회복지기금	271,638,870	17,735,142	24,293,072	265,080,940
자활기금	80,000,000	342,651,500	16,567,220	406,084,280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868,093,950원으로 확인되었음.

(2) 채무

- 검사결과 2016회계연도에 채무잔액을 상환하여 전년도말 채무액 1,400,000,000원이 소멸되었음.

(3) 기금

본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음.

기금현황

(단위: 원)

구분	전년도 이월	수 입					지출	당해연도 말 현재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	1,085,518,000	30,860,292	16,909,417,927	301,958,641	93,253,291	18,421,008,151	-
식품진흥기금	-	-	-	333,259,940	5,793,590	72,952,030	412,005,560	-
사회복지기금	-	-	14,293,072	3,475,025,526	56,833,390	-	3,546,151,988	-
자활기금	-	-	16,567,220	1,320,759,072	21,023,840	20,301,261	1,378,651,393	-
양성평등기금	-	-	-	512,738,059	9,489,121	-	522,227,180	-
재난관리기금	-	785,518,000	-	3,480,260,156	72,955,110	-	4,338,733,266	-
신청사건립기금	-	100,000,000	-	7,457,605,404	130,242,900	-	7,687,848,304	-
우의광고장비기금	-	200,000,000	-	329,769,770	5,620,690	-	535,390,460	-

- 검사결과 식품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의 지출액은 18,421,008,151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음.

(4) 공유재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음.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737,144,823,863	63,660,403,137	59,337,829,297	741,467,397,703	
행정 재산	공공용재산	206,980,823,844	14,026,441,045	11,459,756,925	209,547,507,964
	공용재산	511,193,897,101	48,253,396,629	46,739,067,961	512,708,225,769
	기업용재산	0	0	0	0
	보존재산	0	0	0	0
	소계	718,174,720,945	62,279,837,674	58,198,824,886	722,255,733,733
일반재산	18,970,102,918	1,380,565,463	1,139,004,411	19,211,663,970	

- 검사결과 전년도말 현재액이 737,144,823,863원이 2015년도 결산서상 당해연도말 현재액 1,247,563,774,176원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별도 명시하였음.

(5)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음.

물품 증감 현황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815	181	67	929
금 액	5,602,858,000	588,430,553	449,354,747	5,741,933,806

-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 보다 139,057,806원이 증가한 5,741,933,806원이 확인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승용차 및 화물차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한 것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분야

(1) 세입예산액 편성의 적정성

[현 황]

연도별 지방세·세외수입 예산현황 분석

(단위: 원)

구 분	2014		2015		2016	
	예산액	징수결정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지 방 세	77,302,000,000	85,796,605,440	86,324,000,000	96,936,423,730	94,417,000,000	102,352,042,875
경 상 적 세외수입	18,903,088,000	20,359,080,740	22,140,865,000	24,521,198,420	22,213,115,000	27,055,000,720
임 시 적 세외수입	6,434,502,000	25,152,851,180	7,213,736,000	25,632,086,320	10,244,381,000	31,204,217,580
합 계	102,639,590,000	131,308,537,360	115,678,601,000	147,089,708,470	126,874,496,000	160,611,261,175

- 지난 3개년도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에 해당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 차액은 2014년 28,668,947,360원, 2015년 31,411,107,470원, 2016년 33,736,765,175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문제점]

- 매년 본예산 편성시 지난년도 결산액 기준이 아닌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년도 최종 결정된 예산액보다 적은 금액임. 2016년도는 본예산 이후 3회의 추가경정을 거쳐 세입의 증가를 판단하여 반영하였는데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특히, 재산세의 경우는 1회 추경시 50억원, 2회 추경시 37억원, 총 83억원을 증액하였음에도 40억원이 추가 징수결정 되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의 증대는 세출재원의 증대로 이어지므로 세입예산액 편성시 전년도 결산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이분석을 한 후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가경정 시 경기활성화 및 지가상승분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반영함으로써 당초 예산액보다 과다하게 징수결정·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세입예산 결정심의 시 정확한 세입추계를 요구하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세입규모를 조정하는 시도도 필요해 보임.

(2) 해운대모래축제 예산초과로 인한 예비비 사용

[현황]

- 해운대모래축제는 해운대구가 주최하는 행사로 축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예산 편성과 예산 초과지출을 하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함.

[문제점]

- 행사를 주관하는 보조사업자가 축제를 진행하고 관리를 함에 소홀하여 예산초과지출 상태가 발생하였음.
- 대행사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축제를 진행하였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행사별로 지출금액을 협상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선지출 후정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기에 예산을 초과한 것은 당연한 결과임.
- 마지막으로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 무리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음. 기존 축제와 차별화를 위하여 미디어사파드, 모래조각 3D 입체 제작 등의 시도는 좋았으나 업체와 구두협찬 약속만을 믿고 진행을 하는 등 방만한 관리가 예산을 초과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해운대모래축제 예산을 3억 정도 초과하게 되었고, 추경을 통한 재원마련도 검토가 되었으나 지급지연으로 인한 구 이미지 훼손을 염려하여 예비비 301,153,000원을 사용하였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을 위한 제도임. 매년 주최하는 해운대 모래축제의 예산초과를 불가피한 지출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일단은 보조사업자를 공고를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축제 전반을 진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예산 내에서 축제를 진행하도록 해야 함.
- 그리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대행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아보고 평가하여 가격을 협상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한 지출이 생기는 것을 줄여야 함. 축제 진행에 따른 지출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토하여 예비비로 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3) 일반회계 집행잔액 최소화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비율
2016	534,928,018,890	457,883,648,960	45,900,627,610	31,143,742,320	5.8%
2015	483,057,134,730	435,500,473,960	21,095,389,890	26,461,270,880	5.5%
2014	431,205,127,950	394,407,575,680	20,316,310,730	16,481,241,540	3.8%

- 2016년의 불용률은 5.8%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2015년 대비 대략 46억원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음.

2)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단위: 원)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31,143,742,320	596,778,390	0	5,652,290,594	5,826,344,336	19,068,329,000

3) 집행잔액 과다발생의 사유

- 동백섬 출렁다리 설치사업이 문화재현상변경심의결과로 인해 120m에서 28m로 변경 조성되면서 총 사업비가 13억에서 9억으로 감소되어 집행잔액 과다 발생.
- 사업비 20억원이 예상되는 송정터널 보도설치공사(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15억원 미확보)를 BRT사업 등이 완료된 이후 도로여건을 파악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림. 송정해수욕장 일원 보도정비사업으로 변경 요청함으로써 당초 사업인 송정터널 보도설치공사 관련 집행잔액 발생.
- 각 사업별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16개 구군별로 조정하여 내시를 내려주는 방법에 의한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집행잔액 과다 발생.

예)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예산 11억, 집행잔액 6억)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임. 일단 변경이 일어나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비용 또한 발생하기 때문임. 위에서 예를 든 송정터널 보도설치

공사만 살펴봐도 2014년에 실시설계용역 관련하여 81,744,000원을 지출하였고, 2016년에 교통안전성 검토 용역 관련 18,414,000원을 지출하였음.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인한 지출 최소화와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 자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그리고 집행잔액이 크거나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을 살펴보면 각 사업별로 예산을 측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국시비 내시에 의해 예산편성을 하고 있었음. 예산이 이전의 집행실적과 지역적 성격 등을 반영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임. 또한 확보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이 지급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함.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집행잔액 최소화에 힘써야 함.

(4) 과도한 용역 남발

[현황 및 문제점]

용역완료 후 공사시행 못한 건 (2014년~2016년)

(단위: 원)

년도	계 약 명	총계약금액	부서명
2014	송정터널 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81,744,000	건설과
	미포지역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78,512,000	건설과
	반송동 실외체육시설(위터피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용역	18,400,000	교육협력과
2015	해운대 짚와이어 설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19,835,200	관광문화과
	달맞이언덕 하늘숲길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0,420,000	관광문화과
	달맞이길 해월정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55,510,000	교통행정과
	달맞이길 일원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20,750,000	건설과
	명품 자동차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14,250,000	늘푸른과
2016	송정터널 보도설치 교통안전성 검토 용역	18,414,000	건설과

2016년 좌동양묘장 철거 폐기물처리	5,000,000	늘푸른과
2016년 좌동양묘장 철거 폐기물처리	11,203,400	늘푸른과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9,700,000	경제진흥과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19,575,000	경제진흥과

- 위의 용역 계약건과 같이 용역 완료 후 기타 사유에 의하여 공사 시행을 하지 못한 사업들이 줄지 않고 있음. 일부의 주관된 판단과 성급한 추진으로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결국 이러한 용역 남발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까지 이어져 심각한 손해를 떠안는 상황임.

[개선 및 권고사항]

- 이러한 용역남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분석 및 검토가 전제되어야 함. 사업 하나를 진행하더라도 위치선정(제한구역 여부) 및 효율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임. 현재 주먹구구식의 방만한 운영으로 막상 사업추진 시 추가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발견되면서 결국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상황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 따라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임.

2.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분야

(1) 특별회계 · 세입증액 및 수납을 제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교통행정과)

(단위: 천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징수결정액	5,663,710	8,768,347	4,551,825	8,751,799	4,828,132	8,484,294
수 납 액	3,833,036	1,499,488	3,171,483	1,284,430	3,327,602	1,416,665
미수납액	1,830,674	7,268,859	1,380,342	7,467,369	1,500,530	7,067,629
수납비율	67.7	17.1	69.7	14.7	68.9	16.7

지하수이용부담금(건설과)

(단위: 천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징수결정액	194,592	1,484,583	178,558	1,679,175	177,926	1,857,733
수 납 액	177,851	96,502	158,341	113,169	161,314	133,403
미수납액	16,741	1,388,081	20,217	1,566,006	16,612	1,724,330
수납비율	91.4	6.5	88.7	6.7	90.7	7.2

주거환경 개선사업 변상금 및 임대료(건축과)

(단위: 천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징수결정액	34,764	9,826	26,929	42,396	20,478	50,550
수 납 액	25,894	2,524	18,695	225	13,260	144
미수납액	8,870	7,302	8,234	42,171	7,218	50,406
수납비율	74.5	25.7	69.4	0.5	64.8	0.3

-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8,568,159천원, 지하수이용 부담금 1,740,942천원,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변상금 및 임대료 57,624천원으로 특히 전년도 수납비율을 보면 1%미만 부서도 있어 수납을 제고와 세입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전직원에게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부여하여 납부독려,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행정제재 등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의료기금특별회계 부당이득금 체납액 징수방안 마련

(단위: 천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징수결정액	827,349	444,656	189,118	1,227,720	928,481	1,202,859
수 납 액	33,095	11,190	64,360	149,019	18,954	581,970
수납비율	4.0	2.5	34.3	12.1	2.0	48.4

□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

(단위: 천원)

미수납액	사유별	
	무재산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중
1,530,416	576,223	954,193

- 미수납액 중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954,193천원으로 분석한 결과
 - 개인 3명 11,159천원
 - 병의원 5곳 943,034천원으로
- 기초수급자는 분할납부 등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환수 불가하거나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결손 처분하고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재산 추적조사 등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징수에 특별히 노력 바람.

(2) 달맞이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집행현황(주차장특별회계)

(단위: 원)

당초예산 (2015년)	집행내역					
	2015년			2016년(명시이월)		
	소계	집행액	불용액	소계	집행액	불용액
950,000,000	100,000,000	77,085,000	22,915,000	850,000,000	1,161,600	848,838,400

- 부산시의 명소인 해운대 관광지 달맞이길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달맞이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많은 국내·외인들이 함께 힐링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한다는 취지는 매우 좋은 생각으로 사료되나,
- 자연 및 주거환경 훼손 등을 우려하는 주민과 인근 주민의 사전 설명회 등의 부족으로 인근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
- 2015년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 중 계속되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언론보도로 공사를 중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으며,
- 2016년에는 달맞이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더 이상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자체를 취소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음.
- 달맞이길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주민 설명·설득 없이 추진하여 열악한 구 재정으로 78,246,600원이 집행되고 848,838,4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차후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주민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성과보고서 분야

(1) 설정근거가 미흡한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의 타당성 부족

[현 황]

- 의회사무국은 ‘의원역량 제고를 통해 구정발전을 이끌고자 한다’ 라는 정책사업목표를 가지고 의사운영, 의정활동지원, 의정홍보, 국내외교류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관련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는 다음과 같음.

성 과 지 표	측 정 방 법	목표치	실 적
의사운영 지원 횟수(회)	회의록 발간 횟수	6	8
	회의 개최 횟수	6	8
의정수행활동 지원 횟수(회)	도서 구입 수량	85	105
의정활동 홍보 지원 건수(회)	신문·잡지 등 언론 노출 회수	5	10
국내외 연수 실시 횟수(회)	국내외연수·국제교류행사 참가횟수	8	8

[문제점]

- 성과지표와 그 측정방법이 의사운영지원횟수 등 전부 횟수(회)로 한정되어 있고 너무나 쉽게 달성 가능한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특히, 국내외 연수 실시 횟수라는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은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부적절해 보임.

[개선 및 권고사항]

- 주민과 공감하고 감동받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나은 성과 지표와 측정방법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임. 특히, 외유성, 연수보고서 대필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해운대구 정책에 적용 가능한 분야를 사전 연구하여 연수교육을 선택하고 해외연수 후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활용한 사례와 참가자별로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고 그 결과물을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으로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2) 정책사업목표와 주요내용 간 연관성 부족

[현 황]

- 행정관리국의 정책사업목표 중 ‘주민과 함께 성숙한 자치행정을 구현한다’의 주요내용은 출산장려 및 육아를 위한 근무 환경 향상과 국내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도시 간 우수사례 벤치마킹임.
- 주민생활지원국의 정책사업목표 중 ‘취약계층 아동의 적극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도모한다’의 성과지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 증가율과 어린이 놀이터 보수율임.

[문제점]

- 행정지원국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충원을 통해 업무 공백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국내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도시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주민과 함께 성숙한 자치행정 구현과의 연관성이 부족해 보임.
- 주민생활지원국의 해당 정책사업목표의 성과지표는 단위사업 중 가장 큰 지출이 발생하는 아동보호에 관한 성과지표는 없으며 단위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성과지표로는 미흡해 보임.

[개선 및 권고사항]

- 행정지원국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정책사업목표의 변경이 필요해 보임.
- 주민생활지원국의 ‘취약계층 아동의 적극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도모한다’라는 정책사업목표에 합당한 성과지표의 변경이 필요해 보임.

4. 결산서 첨부서류 분야

(1)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확인 결과

[현 황]

(단위: 원)

구 분	2015회계연도 결산 시 당해연도말 현재액			2016년회계연도 결산 시 전년도말 현재액		
	수	면적	가격	수	면적	가격
합 계	170,460	1,447,156	1,247,564	13,398	2,261,975	737,145
행정재산	169,551	1,400,907	1,229,112	12,479	2,215,099	718,175
일반재산	909	46,249	18,452	919	46,696	18,970

- 2015회계연도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016회계연도 전년도말 현재액과 상이함.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최근 몇 년간 결산검사시마다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2015년까지 수기로 공유재산 결산을 수정·제출하는 문제점이 반복되어 왔고 이는 정확한 재산현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결산서상 공유재산 자산규모는 새울행정시스템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일치해야 하므로(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233(2017.1.11.)),
-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새울행정시스템을 연계한 전산 자료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결산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는 전산자료(2016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와 2016회계연도 결산서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일치시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물·입목죽·공작물 등의 당해연도 증감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월별·분기별로 변동되는 사항을 파악하고 전산대장을 정비하는 등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1	담당부서	세무2과		
시정 및 개선사항	과오납반환을 제고와 보조금 수요 발굴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지적사항】

○ 일반회계 세입 과오납 현황

(단위 : 원)

과 목		2015 과오납	2014 과오납
지 방 세	등 록 면허세	94,527,210	244,754,790
	주 민 세	21,892,540	9,585,700
	재 산 세	226,937,690	279,861,470
	지난연도수입	402,615,910	254,247,330
세외수입	경 상 적	138,125,650	19,082,020
	임 시 적	83,360,120	275,779,800
국·시 비 보조금		848,368,680	174,524,000
계		1,815,827,800	1,257,835,110

- 세입 일반회계의 과오납반환액은 2014년 대비 557,920,690원(144%) 증가하였으며 수납총액 대비 과오납반환율은 0.4%에 상당함.
- 재산세 과오납은 2015년 힐스테이트위브의 공동주택가격 재산정으로 인한 대량환급 발생분이 대부분이며 지난연도 수입 과오납은 우동지역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요청에 따라 5개년도 재산세분을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소급하여 반환결정한 분임. 이는 올해 재산세분에서 상계처리 되지 못하고 지난연도 수입분으로 표기되어 총액으로 반환처리하고 주거용으로 2015년 세입으로 다시 수시 부과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실제 과오납은 지난연도 수입 과오납의 30~40%에 상당함.
- 경상적 세외수입 과오납 중 115,687,160원은 토지정보과의 공유재산임대료 반환액으로 사유재산임대료 상당액을 전산입력 당시 구재산임대료에 전부 반영하는 오류가 있었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1	담당부서	세무2과		
시정 및 개선사항	과오납반환을 제고와 보조금 수요 발굴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시정 및 조치결과】

○ 지방세 지난연도수입 과오납 발생내역

(단위: 건, 원)

구분	2014회계		2015회계		전년대비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구세	553	254,247,330	1,975	402,615,910	1,422	148,368,580
재산세	469	200,779,200	1,946	399,275,490	1,477	198,496,290

※ 지난연도수입 과오납 중 99.2%가 재산세에서 발생

○ 지방세 지난연도수입 과오납의 증가사유 및 조치

- 오피스텔에 대한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경우 재산세를 주택으로 5개년도 소급적용이 가능
- 따라서 지난연도에 건축물, 토지로 부과된 재산세는 과오납으로 반환처리 하고, 과년도분에 대한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2015년도에 재부과

※ 주거용O/T 신청에 따른 2015년 재산세 재부과액 : 274,087천원

→ 지난년도 과오납 반환액의 68%상당은 2015년 재산세(주택)으로 재부과됨

- 이는 재산세(건축물, 토지)와 재산세(주택)이라는 세목의 변경 과세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난연도 재산세의 소급적용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지난연도수입 과오납 발생액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외수입 과오납 사유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도	계	착오부과	이중부과	불복청구	기타
2015	221,485,770	196,296,040	11,403,720	-	13,786,010
비율	100.0%	88.6%	5.2%		6.2%

- 세외수입 과오납 중 착오부과가 196,296,040원으로 8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176,537,370원은 부과과목 정정으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과목으로 충당 하였으며,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 중 115,845,160원은 토지정보과 공유재산대부료 구세외 시군구재산대부료를 시세의 시도유재산대부료로 과목정정, 충당한 것임.

- 향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무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산교육, 업무 매뉴얼 보급을 통하여 착오부과를 최소화하여 과오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함.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1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시정 및 개선사항	과오납반환을 제고와 보조금 수요 발굴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지적사항】

- 보조금의 미교부금액이 사업비를 절약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인지 예산의 연례적 반납인지 따져 보고 정확한 수요예측과 홍보로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굴하고 사업종류, 규모, 대상자 선정과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 필요

【시정 및 조치결과】

- 2015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과오납반환액 내역

(단위:천원)

연번	반납월	내역	금 액			비고
			계	국비	시비	
		총 계	283,052	196,821	86,231	
1	2015.03	2015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초과 교부금 반납	30,000	-	30,000	
2	2015.06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교육급여 보조금 잔액 반납	26	23	3	
3	2015.10	2015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초과 교부금 반납	630	490	140	
4	2015.10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초과 교부금 반납	160,542	124,866	35,676	
5	2015.12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초과 교부금 반납	91,854	71,442	20,412	

- 2015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과오납은 부산광역시 보조금 변경내시 및 소관부처 이동에 따른 반납 요청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주력하여 보조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2	담당부서	세무2과		
시정 및 개선사항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설정 및 통합관리·안내제도 도입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지적사항】

○ 세입 결산현황

(단위: 천원)

과 목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 손 처 분	다음연도이월
지 방 세	96,936,424	94,177,247	113,861	2,645,315
경상세외수입	24,521,198	23,312,206	-	1,208,993
임시세외수입	25,632,086	9,295,354	2,869,775	13,466,957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위 표에서와 같이 지방세수입은 97.6%, 경상적 세외수입은 95.1%에 이르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36.3%에 불과함.
- 또한, 지난해 이월된 금액은 올해 징수결정액에 합산 관리되므로 징수의지가 낮아지고 장기 미수납분을 결손처리해 미수납율을 줄이고는 있으나 이는 예산편성 평가 시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 등 금전급부 성격의 세외수입 수납율은 90%에 상당하나 과징금, 과태료 등 의무불이행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세외수입 수납율은 20%에 불과해 조세저항이 매우 강함.
- 이는 체납자의 인식 개선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국민적 교육과 홍보가 필요해 보이며 지방세법에 체납처분의 권한이 있기는 하나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지방세에 준하는 사후관리와 해당 지자체에 강력하고 현실성 있는 권한부여가 절실함.
-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의 4.98%에 불과하지만 미수납액의 80.5%를 차지하고 있는바 매년 징수목표액을 설정해 신속한 체납액 정리와 체납자별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하여 관리, 징수하는 제도 및 주기적 안내서비스 도입이 필요해 보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2	담당부서	세무2과		
시정 및 개선사항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설정 및 통합관리·안내제도 도입	반영여부	반영 ○	미반영	검토중

【시정 및 조치결과】

-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이 36.26%로 저조한 이유는
 -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중 과년도분이 57.3%, 과징금 및 과태료가 19.8%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세외수입 규모의 지속적 증가에 비례하여 누증되는 장기 체납과 단속 불만 등 상대적으로 납부의식이 부족한 과태료가 주요 원인임.
 - 2015년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포함) 175억원 중 과년도분이 127억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 징수율 개선을 위한 방안 및 노력으로는
 -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2012. 2. 21.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을 신설하여 과년도 체납액을 통합관리 하고 있으며, 2011년도 과년도 징수율이 5.17%에서 2015년도에는 13.56%로 2.6배 개선되었음.

과년도분 징수율(%)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4.73	4.53	5.17	7.88	12.01	11.16	13.56

※ 부산시 주관 「세외수입 체납정리 실적평가」 - 3년 연속 “우수” 수상

-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업무 연속성 결여에 따른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목표액 달성 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무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세외수입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홍보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 2015년부터 미래의 납세(납부)자인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세금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연 2회 이상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증명서 제도 도입 건의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노력 중임.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 관리·징수제도의 도입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관련 법률과 전산시스템이 서로 상이하어 별도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통합하여 관리·징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다만, 지방세 체납정리팀과 세외수입 체납정리팀 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체납자 정보 및 전산자료 공유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6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시정 및 개선사항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 작성 착오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지적사항】

-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중 용도별 현황 작성에 있어 2015회계연도 결산액 전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10,534개 2,224,647㎡ 677,246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회계연도 결산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7,596개 1,410,007㎡ 1,187,665백만원으로 많은 차이가 있음.

【시정 및 조치결과】

- 2014회계연도 결산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에 새울 내부행정시스템 상 2015년 공유재산 증감액을 합하여 결산 작성

【개선사항】

-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부산시 대부분의 구군에서 시에 보고하는 공유재산 증감액 및 현황보고와 구의회에 보고하는 공유재산 결산의 내용이 현격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수치의 근거가 없는 전년도의 결산서를 그대로 답습하여 공유재산 결산을 하고 있는 실정임.
- 금회는 수기로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받되, 향후 각 부서 재산관리관에 공유재산 새울행정시스템 기능 및 활용법 교육 및 재산관리관 업무연찬회를 통하여 우리구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새울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할 예정임.
 - 2016년 5월 중, 강사 초빙을 통한 교육 및 일제정리
- 2016회계연도부터는 명확한 대장 상 근거가 있는 공유재산 현황을 바탕으로, 새울 시스템을 통해 시에 보고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서의 일치시켜 매년 반복되는 문제 해소.
 - 사전 구의회 의장단 회의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7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시정 및 개선사항	소규모주차장 실제 부지 매입 재산과 재산관리대장 비교 분석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지적사항】

구 분	부지 매입 재산		재산 대장 등록		재산등록(감)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2014년	19	2,252	10	1,973	9	279
2015년	27	1,869	19	1,677	8	192

- 공유재산 관리 중 소규모주차장 건립 후 매입한 토지와 공유재산관리대장이 등재되어 있는 재산을 비교 분석 결과 2014년 19건에 2,252㎡를 매입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대장에는 10건 1,973㎡로 9건에 279㎡가 미등재되어 있으며
- 2015년 25건 1,869㎡를 매입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대장에는 19건 1,677㎡로 8건에 192㎡가 미등재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음

【시정 및 조치결과】

구 분	부지 매입 재산		재산 대장 등록		재산등록(감)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2014년	19	2,252	10	2,505	21	0 (전체면적 일치)
2015년	25	1,760	13	1,507		
계	44	4,012	23	4,012		

- 2015년 부지매입 재산은 2016년 부지매입 2건이 포함된 현황으로 25건 1,760㎡이며, 재산대장 등록건수는 공용주차장이 포함되어 실제 13건임.
- 부지매입 재산과 재산대장 등록상의 차이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시 2~3개 필지를 합필하여 조성하는 경우가 있어 건수에 차이가 있으며,
- 면적의 차이는 재산대장에 합필시 면적 누락, 인접부지 연계 조성 시 전년도 대장 포함 등의 사유로 불일치하여 금번에 부지매입 재산과 재산대장 등록을 일치시켰음.